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제정에 즈음하여

### On Occasion of Setting Criteria for Scope and Cost of Architectural Service

강인수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기획실 이사  
by Kang In-Soo

IMF시기,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설계 수주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때마침 1999년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이 폐지되면서 건축설계비가 IMF이전에 비해  $\frac{1}{2} \sim \frac{1}{3}$  수준으로 격감하였고, 급작스런 설계비 수준의 하락은 건축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인해 많은 건설회사들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동안 법정관리나 화의에 들어갔던 건설회사들도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단기간 동안에 급성장하고 있는 사례를 접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독 건축설계 분야만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실질적으로 최근의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젊은 건축가들의 야근과 철야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은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경기 회복에 가장 많은 공을 세운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심지어 건축사들이 느끼는 건축설계는 더 이상 창작활동이 아니라 중노동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지탱해온 끈끈한 인간관계마저 무너져 버려 건축계 전반이 붕괴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들기도 한다.

설계비 수준의 하락으로 간과할 수 없는 현상 중의 하나는 건축설계업무에 대한 경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건축설계비가 건설사업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 만큼 건축설계에 대한 위상도 낮아져 건축사사무소 선정시 설계능력보다는 소위 인허가 능력(?)이나 설계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설계사가 선정되는 웃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와 같이 건축설계직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건축설계 업무에 대한 경시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건축을 천직으로 알고 건축사사무소에 들어온 많은 젊은 건축인들이 건축을 등지고 있다. 그에 따른 결과로서 건축사사무소마다 경력직 사원들이 부족하여 설계업무의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설계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은 급기야는 건축문화 전반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도면의 품질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설계의 부실은 가까이는 건축주, 사용자, 시공사, 감리자, 건축사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부실설계의 피해는 사회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굳이 삼풍백화점의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질의 설계는 도시환경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건축설계비 수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1999년에 폐지되었던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다시 제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이 제정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건축주와 건축사가 설계비를 정하기 위한 단순한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 기준을 근거로 건축사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건축사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느냐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어떤 이는 계약전 설계서비스 제공 거부운동을 벌일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건축사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비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여 건축사들은 자신의 사무실 직원들이 더 이상 저임금 하에서의 착취의 대상이 아닌 건축생산활동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건축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질 높은 건축을 생산하기 위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건축사들이 자신의 직원과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건축사들의 건축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있어야만 건축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건축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야 비로소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 즉, 질 높은 건축디자인의 생산이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자체가 건축사로 하여금 정당한 설계비를 받게 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사에게 줄 설계비를 줄이는 만큼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 건축주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을 설득하여 정당한 설계비를 받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건축사들이 설계수수 못지 않게 설계업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그에 걸맞는 건축디자인 생산에 대한 신뢰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